

전주지방법원 2020. 1. 15 선고 2019가단28258 판결 [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11. 18 선고 2020나875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0. 1. 15 선고 2019가단28258 판결

전문

원 고 A 교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정, 남규석, 이수호

피 고 B 교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유영

변론 종결 2019. 12. 11

판결 선고 2020. 1. 15

주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(이하 편의상 통틀어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에 관하여 이 법원 임실등기소 2019 . 7. 8. 접수 제 6069 호로 함께 마친 각<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(이하 편의상 통틀어 '이 사건 등기'라고 한다)>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2019 . 7. 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나오는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마쳐진 이 사건등기가 "신청권한없는 자의 신청에의하여"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,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.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, '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 기명의 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등기가 다른 사람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그 표시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, 그 표시 변경이 등 기명의 인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-비록 그 표시 변경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법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-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데(대법원 2012 . 3. 15. 선고 2011다 9136판결 등 참조) ', 이 사건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부동산은 여전히 피고의 각 소유로 표상되어있으므로 이 사건등기는 그 등 기명의 인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있는데다가, 설령 -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-적법한절차에 의하여 았은 채 이 사건등기가 마쳐졌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, 그러한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등기의 흠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, 소로써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 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박관근

별지